

『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국민과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용도지역·지구에서의 건폐율·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행위제한 항목 삭제(안 제10조)
-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명시 및 수립지역 건폐율·용적률 완화(안 제21조의2, 제59조의3, 제64조)
- 개발행위허가 시 녹지지역의 입목축적도 완화(안 제22조)
- 방재지구의 건폐율·용적률 완화(안 제59조의3, 제64조)
-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건폐율·용적률 완화(안 제60조, 제65조)
-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내 야영장 시설 허용(안 별표14, 17)
- 보전녹지지역 내 제1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등 허용(안 별표14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시행령, 시행규칙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부서합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
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으로 완화된 규제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,
 - 용도지역·지구에서의 건폐율·용적률을 완화하고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행위제한을 폐지하는 등,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됨.